

## 교육대학원 학비감면장학 지급 기준표

2017.08.02.

구분	대 상 자	인원	금액	비고
<b>교직장학</b>	현직 - 어린이집, 유치원 교사, 원감, 원장 - 초·중등교사, 교감, 교장, 기간제 교사 (방과 후 교사, 인턴교사, 상담사 제외) - 장학관, 장학사, 교육연구관, 교육연구사	대상자	수업료의 30%	
<b>특별장학</b>	<b>A</b>	- 아주대학교 교직원 - 학교법인 대우학원 직원	대상자	수업료의 50%
	<b>B</b>	-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 - 아주자동차대학 교직원 - 아주대학교 연구(조)원	대상자	수업료의 40%
	<b>C</b>	- 현직 공무원(의무복무자 제외) - 국회의원 및 시/도의회 의원 - 전국대학(교) 교직원	대상자	수업료의 30%
<b>가족장학</b>	-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부부, 형제 및 부모 자녀 중 1인(학기 중 동시 재학 기준)	대상자	수업료의 50%	학기 중 휴학 시 환수
<b>동문장학</b>	- 본 교육대학원 졸업자로서 재입학한 자	대상자	수업료의 40%	장학금 비수혜자
<b>아주장학</b>	-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	대상자	수업료의 30%	
<b>교직원 자녀장학</b>	- 아주대학교 교수 및 정규 직원 자녀	대상자	수업료의 100%	